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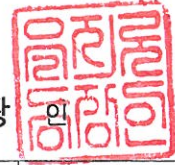
공고 제 42 호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01일

을지로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철	김 *철 1954-01-04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(저동2가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1-01